

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9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, 관광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·개정하여 안산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함

주요내용

- 관광진흥법 제48의9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 법령 변경(안 제13조~제15조)
- 조문 미비사항 보완 및 정비 : 안 제1조 ~ 제3조, 제6조 ~ 제8조
 - 용어 정의(제2조), 적용범위(제3조), 상위법 관련사항(제6조), 조문(제1조, 제7조)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
 -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, 그 밖에 필요사업을 위탁 가능사무로 명시(제8조)
 - 민·관 협업형 관광축제 발굴 및 홍보마케팅 협력 강화를 위해 신설
- 관광모니터 운영 조항 삭제 : 현행 조례 제5조
 - 조례 제정 후 관광모니터 제도 미운영 및 실효성이 낮아 본 조항 삭제
 - 안산시관광협의회와 업무협업을 통한 관광 불편 및 개선사항 등 처리
- 관광정책 자문 규정 신설 : 안 제5조
 -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자문료 지급 등 반영
 - 관광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자문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
-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 신설 : 안 제9조 ~ 제12조
 -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선발, 직무, 활동시간, 지원 등 반영
 -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주요사항을 조례에 반영
- 지역관광협의회 설립·지원 규정 신설 : 안 제13조 ~ 15조
 - 협의회 설립 허가(제13조), 지원(제14조), 지도감독(제15조) 등 관련사항 반영
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 및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 지원 규정 적용

- 개정조례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18. 3. 21. ~ 2018. 4. 10.(21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4
 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붙임 1 >

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관광진흥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과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 및 관광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관광진흥

제4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관내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경우
2. 내·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경우
3. 관광기념품, 지역특산품을 개발·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
4.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
5. 관광 축제·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
6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관광정책 자문 등)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, 관광 관련 대학, 5년 이상의 관광분야 현장경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관광안내소 운영

제6조(관광안내소)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.

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
2.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
3.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·판매에 관한 사항
5.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

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4장 관광사무 위탁

제7조(관광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위탁사무)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
2.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·운영
3. 관광 분야 교육 운영
4. 관광 관련 공모전
5. 시티투어 운영
6. 문화관광해설사 관리
7.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
8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5장 문화관광해설사

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선발)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.

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시 문화관광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해설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,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양성교육 이수 자 중 최종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한다.

제10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역사·문화 및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
2.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
3.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

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.

제11조(활동시간 등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배치 장소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장 여건 및 관광객 등의 인원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한다.

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,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)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
2. 근무복 구입비
3.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
4.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1일 활동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·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장 관광협의회

제13조(관광협의회 설립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시 관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법인 명칭 및 업무
2. 법인 설립의 필요성
3.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
4. 법인 명칭의 유사성
5.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
6.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

제14조(지원) 법 제48조의9제6항에 따라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협업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과	관광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관광과장 이 용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관광정책팀장 박 종 홍 (행정 2105)
	담당 자 성명·전화	이 종 민 (행정 3059)

<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장 총칙</u>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 관광진흥과 관광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과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관광사업자"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 2. "여행업자"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적용범위)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3조(적용범위)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 및 관광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u>제2장 관광진흥</u>	
제5조(관광모니터 운영) ① 시장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관광모니터를 위촉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촉된 관광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관광모니터의 위촉대상·인원·임기·운영방법·보상금 지급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< 삭 제 >
제6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지원 등) ① 시장은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	제4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) ① 안산시장은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안산시(이

현행	개정안
<p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<u>보조금을 지급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</p> <p>2. 내·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경우</p> <p>3.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,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·판매하는 경우</p> <p>4.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</p> <p>5.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·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</p> <p>6.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보조금의 신청·지급·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시 관내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경우</p> <p>2. 내·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경우</p> <p>3. 관광기념품, 지역특산품을 개발·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</p> <p>4.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</p> <p>5. 관광 축제·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</p> <p>6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5조(관광정책 자문 등)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, 관광 관련 대학, 5년 이상의 관광분야 현장 경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4조(관광안내소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관광안내소(이하 “관광안내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관광안내소 운영</p> <p>제6조(관광안내소)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</p> <p>2.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1.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</p> <p>2.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3.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</p> <p>4.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·판매에 관한 사항</p> <p>5.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</p> <p>④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광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3.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</p> <p>4.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·판매에 관한 사항</p> <p>5.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</p> <p>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관광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관광사무 위탁</p>
<p>제7조(관광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,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관광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
<p>제8조(위탁사무)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. 국내·외 홍보관 및 박람회(전시회) 참가 운영 3.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. 관광 관련 공모전 5. 시티투어 운영 6.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	<p>제8조(위탁사무)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2.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·운영 3.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. 관광 관련 공모전 5. 시티투어 운영 6.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.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 8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5장 문화관광해설사</p> <p>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선발)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시 문화관광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해설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양성교육 이수자 중 최종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10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역사·문화·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.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.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<p>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11조(활동시간 등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배치 장소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장 여건 및 관광객 등의 인원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한다.</p> <p>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,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단정한 복장을 착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지원)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. 근무복 구입비 3.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.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<p>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1일 활동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·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지역관광협의회</p> <p>제13조(관광협의회 설립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시 관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인 명칭 및 업무 2. 법인 설립의 필요성 3.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4. 법인 명칭의 유사성 5.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6.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</p> <p>제14조(지원) 법 제48조의9제6항에 따라 시장은 협회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협업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15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협회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·회계 및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보칙</p>
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